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460호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연법」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연안전지원센터(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안 제3조)
- 나. 공연안전지원센터 전문인력, 전담조직, 사무공간, 정보시스템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사항(안 제8조)
- 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공고,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jws527@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